장기구득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(제24조 관련)

1. 시설 및 장비
 가. 장기구득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
 나. 법 제17조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통보·신고에 필요한 전산장비
 다. 구급차 등 환자 긴급 이송수단
 라. 다음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실
  1) 사람백혈구항원검사
  2)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
  3) 혈액형검사(ABO/Rh type and antibody screening)
  4) 그 밖의 감염 표지자(標識子) 검사
 마. 사람백혈구항원검사 및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에 필요한 시약
 바. 환자의 검체(檢體) 보관에 필요한 냉동 온도가 -70℃ 이하인 냉동고
 ※ 비고: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및 장비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2. 인력
 가. 장기구득 의사 1명 이상
 나. 장기구득 간호사 6명 이상
 다. 사회복지사 1명 이상
 라. 행정 업무 담당 인력 1명 이상